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3일 김태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1. 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태년의원)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9년 이후 아동수당 금액이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인상하려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

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아동수당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금액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고, 특히 개정안별로 지급 금액도 상이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검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율 확대 필요 등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